

‘16. 2.

2016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 공시



군산시

순 서

①	공통공시 총괄	2
②	예산규모	3
▪	세입예산	3
▪	세출예산	4
▪	중기지방재정계획	5
▪	지역통합재정통계	6
③	재정여건	7
▪	재정자립도	7
▪	재정자주도	8
▪	통합재정수지	9
④	재정운용계획	10
▪	성인지 예산현황	10
▪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	성과계획서	13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4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5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6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8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8

2016년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군 산 시 장 (인)



- ◆ 우리 시(도)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9,65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9,473억원)보다 181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2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46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0억원입니다.
- ◆ 우리 시(도)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6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59%입니다.
- ◆ 우리 시(도)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 재정은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많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과 예산절감(경상분야 전년대비 5% 추가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 자 : 기획예산과 홍상훈(063-454-2313)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산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9,654	9,584	70	9,473	8,848	628
	세 출 예 산	9,654	9,584	70	9,473	8,848	628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6.62	22.38	4.24	36.93	24.22	12.71
	재정자주도[당초]	56.59	50.40	6.19	63.81	58.75	5.06
	통합재정수지[당초]	1,378	2,559	-1,181	149	80.96	68.04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군산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65,404	745,020	135,230	54,556	30,59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814,645	886,146	913,592	958,388	965,40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합 계	654,675	100.00	716,272	100.00	738,757	100.00	767,015	100.00	745,020	100.00
지방세	132,274	20.20	146,492	20.45	147,047	19.90	142,737	18.61	149,737	20.10
세외수입	39,766	6.07	47,961	6.70	23,816	3.22	28,900	3.77	32,591	4.37
지방교부세	200,379	30.61	202,179	28.23	188,979	25.58	189,879	24.76	194,037	26.04
조정교부금 등	24,105	3.68	27,744	3.87	25,033	3.39	25,033	3.26	29,244	3.93
보조금	252,150	38.52	290,096	40.50	302,482	40.94	336,866	43.92	323,412	43.41
지방채	6,000	0.92	1,800	0.25	15,900	2.15	14,500	1.89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35,500	4.81	29,100	3.79	16,000	2.1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군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65,404	745,020	135,230	54,556	30,59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814,645	886,146	913,592	958,388	965,40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합 계	654,675	100.00	716,272	100.00	738,757	100.00	767,015	100.00	745,020	100.00
일 반 공 공 행 정	21,943	3.35	22,013	3.07	30,846	4.18	27,712	3.61	38,853	5.22
공공질서 및 안전	28,867	4.41	41,358	5.77	29,441	3.99	21,768	2.84	27,824	3.73
교 육	11,086	1.69	12,194	1.70	12,003	1.62	11,738	1.53	5,886	0.79
문 화 및 관 광	55,433	8.47	43,778	6.11	50,642	6.86	38,488	5.02	36,342	4.88
환 경 보 호	70,955	10.84	78,612	10.98	73,965	10.01	84,673	11.04	40,305	5.41
사 회 복 지	169,070	25.82	199,416	27.84	237,350	32.13	258,393	33.69	254,824	34.20
보 건	9,905	1.51	10,898	1.52	10,371	1.40	11,746	1.53	12,332	1.66
농 립 해 양 수 산	74,840	11.43	82,397	11.50	80,584	10.91	80,632	10.51	93,234	12.51
산 업 · 중 소 기 업	14,906	2.28	17,880	2.50	15,059	2.04	20,475	2.67	19,003	2.55
수 송 및 교 통	54,422	8.31	54,495	7.61	51,320	6.95	54,933	7.16	64,001	8.5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9,903	6.10	38,229	5.34	28,989	3.92	38,522	5.02	36,231	4.86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10,307	1.57	15,849	2.21	12,882	1.74	10,339	1.35	14,469	1.94
기 타	93,038	14.21	99,154	13.84	105,306	14.25	107,596	14.03	101,717	13.6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73,456	1,021,292	1,014,364	1,041,921	1,061,185	5,112,218	2.20
자 체 수 입	283,680	320,552	293,700	297,410	299,284	1,494,626	1.30
의 존 수 입	611,870	633,052	655,829	676,400	693,530	3,270,681	3.2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906	67,688	64,835	68,111	68,371	346,911	-3.20
세 출	973,456	1,021,292	1,014,364	1,041,921	1,061,185	5,112,218	2.20
경 상 지 출	178,365	145,641	203,634	225,857	239,809	993,306	7.70
사 업 수 요	795,091	875,651	810,731	816,064	821,377	4,118,914	0.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966,550	972,684	6,134	0.63
군산시	958,338	965,404	7,016	0.73
출자·출연기관	8,162	7,280	-882	-10.8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6.62	745,020	198,328	546,693	0	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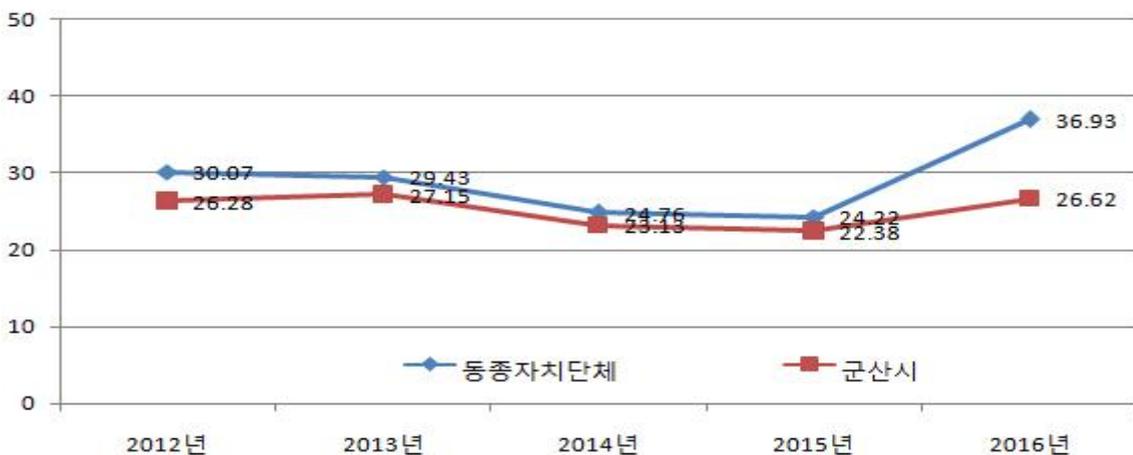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6.28	27.15	23.13	22.38	26.62
최종예산	26.82	29.07	22.95	22.46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2016년도부터 자립도 산정 시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기준으로 작성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소폭 증가로 전년대비 다소 높아졌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6.59	745.020	421.608	323.412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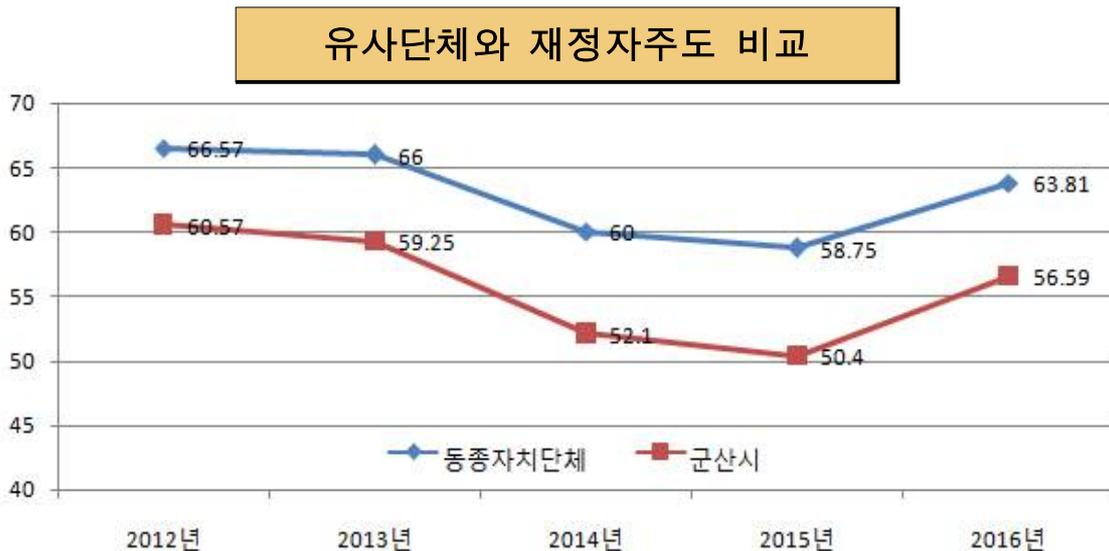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0.57	59.25	52.10	50.40	56.59
최종예산	59.79	59.45	53.49	49.09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2016년도부터 자주도 산정 시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기준으로 작성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증가, 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군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70,711	899,998	355	6,254	5,899	36,564	905,897	-35,186	1,378
일반회계	729,020	716,557	0	2,965	2,965	11,000	719,522	9,499	20,499
기타 특별회계	31,033	51,414	255	3,101	2,846	17,764	54,259	-23,227	-5,463
공기업 특별회계	110,013	126,786	0	0	0	7,800	126,786	-16,773	-8,973
기 금	645	5,242	100	188	88	0	5,330	-4,685	-4,685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2,184	-29,159	-41,358	-24,802	-35,186
통합재정수지 2	7,779	-7,141	-20,400	2,559	1,378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9,058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3억원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7	55,323
여성정책추진사업	21	48,5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5,86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864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군산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965,404	8,192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192	
해 양 수 산 과	수산물종합센터 현대화사업	2,000	
복 지 지 원 과	승화원 노후시설 보수공사	134	
항 만 물 류 과	연안정비사업	600	
건 설 과	주요간선도로 전면 재포장공사	300	
건 축 과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300	
교 통 행 정 과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00	
수 도 과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	350	
총 무 과	주민센터 신축	1,650	
인 재 양 성 과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1,858	
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의집 강당증축	100	
체 육 진 흥 과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200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산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74	131	196	799,577	855,405	-55,829
자 치 행 정 국	1	12	23	38	144,047	134,189	9,857
경 제 항 만 국	1	14	26	43	115,764	105,495	10,269
주 민 복 지 국	1	18	27	38	280,314	281,222	-907
건 설 교 통 국	1	18	30	40	171,591	185,941	-14,350
보 건 소	1	2	4	10	12,239	11,669	571
농업기술센터	1	5	11	15	53,343	49,416	3,927
수 도 사 업 소	1	1	4	3	7,380	69,371	-61,992
시설관리사업소	1	3	5	8	6,011	9,433	-3,422
의 회 사 무 국	1	1	1	1	1,930	1,966	-36
읍 면 동	-	-	-	-	6,958	6,704	25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62	56.59	34.2	20.51	62.04	41.0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2	-7
	부단체장	56	53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6	419	-4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동경비	132	132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8	78	0
	의원국외여비	62	62	0
지방보조금		17,942	13,673	-4,26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587	2,587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845	1,793	-52
공무원 일·숙직비		121	121	0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1,183	-8,580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916	1,183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49	10
업무추진비 절감	72	6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60	-98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80	1,910
지방청사 관리·운영	615	184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289	(-)8,58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3	(-)914
지방세 체납액 축소	(-)4,107	(-)6,330
경상세외수입 확충	1,198	1,40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71	(-)1,260
탄력세율 적용	(-)1,756	(-)1,48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70	0

- ▶ (+) 인센티브, (-) 페널티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지방세 징수율의 이전년도 대비 증감률 규모를 기준으로 등급화, 동종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상위 1/3이상 단체의 평균징수율 대비 인센티브 반영
-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이전년도 대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감소하면 인센티브, 증가하면 페널티 부여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지방세입 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년도 대비 경상세외수입이 증가하면 인센티브, 감소하면 페널티 부여
- ▶ 탄력세율 적용 : 탄력세율 가산 적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보다 높게 운영하는 경우 인센티브, 표준세율보다 낮게 운영하는 경우 페널티 부여
- ▶ 지방세 감면 축소 : 무분별한 감면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지방세를 감면한 것은 감면액의 100%,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한 감면 및 감면총량 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감면액의 150%를 페널티로 반영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군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3
수입징수 태만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16
수입징수 태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미징수	7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군산시가 재정분석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0
재정지원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4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6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